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제복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8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제정의 의의	3
2. 제정안의 구성과 특징	6
3. 주요 사항별 검토	7
가. 목적	7
나. 정의	8
다.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10
라. 소방제복의 제조·판매 제한 및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착용 금지	20
마. 보고·검사 및 권한의 위임·위탁	22
바. 벌칙	23
사. 부칙	2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4.
3. 회 부 일 : 2025.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판매·착用に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

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제복의 착용·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제정의 의의

제정안은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소방제복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사용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과 착용을 규제하려는 것임.

제복공무원의 제복 제조·판매 및 착용과 관련하여, 군인의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규정하고 불법 제조·판매 행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자의 제복 및 유사제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비해, 현재 소방제복의 제조·판매·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처벌의 근거가 없고, 소방제복의 착용에 대해서는 소액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소방제복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현행 「소방공무원법」¹⁾에서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는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차림, 사복 착용의 예외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내부

1) 「소방공무원법」

제23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규율만을 정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소방제복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경범죄처벌법」²⁾ 상 관명사칭 등의 죄에 해당하나 1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부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보임.³⁾

한편, 최근 인터넷 코스튬 상점 등에서 소방복과 유사한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에 핼로윈 축제 의상으로 소방관 복장을 한 일반인들로 인해 재난 현장 수습 및 질서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방청의 설명이 있음.

이에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소방제복 또는 유사제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다른 법률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또는 사용과 그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1973년에 제정되었고⁴⁾,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3) 소방청에 따르면 일반인의 소방제복 착용을 「관명사칭」 등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음.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갑·경찰제복 등을 이용한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되었음⁴⁾.

다만, 제정안은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제조·판매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창설하여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경찰, 군인, 소방관은 모두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행정행위를 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제복 착용의 주요 목적이 경찰 제복과 군인 제복은 체포, 교전 등의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권 제한과 공공질서 유지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표식 제공이라 보이는 반면, 소방제복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시급한 행정행위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표식을 제공하는 기능에 주안점이 있다는 점에서 제복 착용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음.

따라서,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규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가능성, 소방 제복 착용의 주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정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1973. 1.

5) 안전행정위원장,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 2024. 12.

2. 제정안의 구성과 특징

제정안은 법률 제명을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여 본칙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제정안은 경찰제복에 관한 규제법으로서 2014년 제정된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과 조문 구성을 취하고 있음.

조 문	제정안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	비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제3조	제조·판매의 등록	제조·판매의 등록
제4조	결격사유	결격사유
제5조	등록의 취소 등	등록의 취소 등
제6조	장부의 기재·비치	장부의 기재·비치
제7조	명의대여의 금지	명의대여의 금지
제8조	소방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제9조	소방제복 등의 착용 금지	소방제복 등의 착용 금지
제10조	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	벌칙	벌칙
제13조	양벌규정	양벌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제복의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주요 사항별 검토

가. 목적

제정안은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 소방제복의 제조·판매·대여 금지,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착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안 제1조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목적조항으로 보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률명 및 목적 규정에서 “경찰제복” 뿐만 아니라 “경찰장비”를 법률의 규제대상 물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⁶⁾, 제정안은 “소방장비”를 제외하고 있음. 경

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찰장비는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 허리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관 직무수행 중 공권력 행사에 직접 관련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경찰제복과 경찰장비를 일괄하여 규제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소방장비의 경우 그 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이미 제정·시행 중이고, 소방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⁷⁾에서 소방장비를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됨.

나. 정의

법제에서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의 뜻을 미리 명확히 정하여 법률 해석·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두는 것으로,

제정안에서는 “소방제복”, “유사소방제복”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제복”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제복[소방복, 소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한다)

7)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정 안
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유사소방제복”이란 소방제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한편,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소방제복을 “「소방공무원법」 제23조⁸⁾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제복[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여, 제복의 종류를 법률 본문에서 직접 나열하고 있음.

이에 비해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23조는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제복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안 제2조제1항과 「소방공무원법」

8) 「소방공무원법」

제23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3조의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법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제정안은 ①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요소로서 ② 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 ③ 등록 취소사유, ④ 제조·판매 등 사항에 대한 장부의 기재·비치 의무, ⑤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제조·판매의 등록) ① 소방제복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소방제복의 종류를 정하여 소방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소방제복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 정 안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판매업을 한 경우
 5. 등록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기재·비치) ①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대여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판매·대여 연월일
2. 제조·판매·대여 품목과 수량
3. 구매자·대여자의 주소·성명·연령·생년월일(소방공무원은 소속·계급·성명·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 관련 벌칙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방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제 정 안

제13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판매의 등록(안 제3조)

제정안은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소방제복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면서(안 제3조 제1항), 등록절차, 변경등록절차, 등록증의 발급 절차 및 반납 절차 등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제2항).

등록제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등록부 등에 등재함으로써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의미함. 다만, 일반적으로 실정법상 등록은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인허가 제도를 도입할 만큼의 높은 규제 필요성은 없는 경우에 허가 와 신고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제도로써 채택하는 경우가 많음⁹⁾.

완화된 허가제도인 등록제는 일반적으로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사유 등을 규정하게 되는데, 제정안은 등록의 취소 및 영

9)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333면.

업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안 제5조), 완화된 허가제도로 소방제복의 제조·판매 등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임.

소방제복 제조·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무분별한 소방제복의 유통·사용을 방지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소방제복의 제조·판매 등을 행하는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임.

또한,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을 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부실 제조 또는 판매업체의 난립 방지 및 품질개선 등 소방제복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등록요건을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소방제복 제조 또는 판매를 하는 업체는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7개(피복 8개, 소방화 9개 업체)가 운영 중인데,

소방청은 업체 대부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조·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경찰제복 및 군복 제조·판매업 등록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군복·경찰제복 등록·허가제 관련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추는 것	제2조(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판매하는 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

다만, 제정안은 소방제복 제조·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방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2조제1항제1호).

소방제복 제조·판매 등록제는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 방지라는 제정안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안 제8조),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등의 착용 금지(안 제9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안 제12조 및 제13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 방지라는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소방청은 대부분 재난현장에서 경찰, 소방은 협업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민안전 분야에서 일반 국민을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¹⁰⁾ 등을 감안하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결격사유(안 제4조)

제정안 제4조는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취득, 등록 등에 제한이 되는 사유로서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일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¹¹⁾, 결격사유는 해당 등록 제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 한정하여 그 제도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규정해야 하고¹²⁾,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국

10) 소방청은 ①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헬로인 복장으로 변장한 사람으로 착각해 사고현장 도착이 지연된 적이 있고('22.10.31. SBS언론보도), ②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판매 강매 사건이 다수 발생('21.3.23.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보도)한 적이 있다고 설명함.

1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375쪽.

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불가결한 사유에 한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함¹³⁾.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1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4호),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를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하여 소방제복의 제조·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소방제복의 제조 또는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¹⁴⁾.

한편, 제정안은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음(안 제4조제2호).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잔존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최근 입법 경향¹⁵⁾에 비추어 볼 때,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은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4조제3호),

이미 제정안에 소방제복의 유통 규제를 위하여 명의대여 금지(안 제7조), 소방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안 제8조), 소방제복 등의 착용

1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185~186쪽.

1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185쪽, 204쪽.

14)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결격사유의 설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려면 해당 자격, 신분, 인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 등에 한정해야 함.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186쪽).

15) 같은 취지로 「국가공무원법」, 「경비업법」, 「소방기본법」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서 공무원,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바 있음.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102792호, 2020. 12. 9. 의결)

금지(안 제9조)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안 제12조 및 제13조) 등 제재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파산을 이유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 규제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제복뿐만 아니라 경찰수갑, 경찰방패 등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과 그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음.

<등록 결격사유 비교>

구 분	제정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제대상	소방제복 제조·판매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자
등록 결격 사유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u>피성년후견인</u>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구 분	제정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소방청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및 다수의 입법 추세를 고려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3) 등록의 취소 등(안 제5조)

안 제5조는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제조·판매를 한 경우, 5) 등록의 시설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장부의 기재·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명의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방제복 등의

제조·판매 금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제조·판매업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1) ~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이 정한 필요적 등록 취소 요건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제조·판매를 한 경우는,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소방제복 제조·판매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營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호).

등록 취소는 등록을 통해 얻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등록 후 營業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소방제복 제조·판매 등록제를 도입하는 일차적 목적이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營業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 방지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소방청은 일정 기간동안 營業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

로 규정하는 것은 등록 취소의 중대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소방제복 등의 제조·판매 제한 및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착용 금지

제정안은 ①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 및 유사소방제복 제조·판매·대여 금지, ②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을 착용(유사소방제복을 착용하여 소방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포함) 금지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제 정 안
제8조(소방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소방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소방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이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제9조(소방제복 등의 착용 금지) ①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는 소방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소방제복을 착용하여 소방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정 안

※ 참고: 관련 벌칙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를 위반하여 소방제복 또는 유사소방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려는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 제8조·제9조와 같이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제조·판매·대여 금지 및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착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8조제3항에서는 ①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이 허용된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적절한 내용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에 따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되어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영화, 드라마 등에서 소방제

복을 착용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마. 보고·검사 및 권한의 위임·위탁

제정안은 소방청장의 소방제복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보고 요청 권한, 자료제출, 출입·검사, 관계인 질문 규정 및 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을 둠
(안 제10조·제11조)

제 정 안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11조는 제조·판매업자의 보고, 자료 제출, 출입·검사 관계인 질문 규정 및 소방청장 권한의 위임·위탁 등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바. 벌칙

제정안은 ① 무등록 소방제복 제조·판매·대여자, ②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③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소방제복 또는 유사소방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④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가 소방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유사소방제복을 착용하여 소방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형량과 같은 수준임(안 12조).

제 정 안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방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1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정 안

3. 제8조를 위반하여 소방제복 또는 유사소방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소방제복의 유통과 착용을 규제하는 내용으로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은 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모두 이른바 제복공무원으로서 일반인이 제복을 착용할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경찰제복 규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경우, 무허가 군복 판매 및 군인 아닌 자를 위한 제조·판매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 및 군용장구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군복 착용에 관한 죄는

경찰제복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음¹⁷⁾.

이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민생치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반면 군인의 경우 대민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됨.

<경찰제복법·군복단속법·소방제복법(안) 처벌규정 비교>

위 반 행 위	경찰제복법 소방제복법(안)	군복단속법
○ 무등록(무허가) 제복 제조·판매·대여 ○ 유사제복 제조·판매·대여 및 제조·판매·대여 목적 소지 ○ 제복공무원 아닌 자에게 제복 제조·판매·대여 ※ 다만, 군복단속법은 대여금지규정 없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명의 대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없음 (허가취소사유만 해당)
○ 제복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복 착용 ○ 유사제복을 착용하여 제복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게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소방공무원은 군인에 비해 소방점검 등 대민접촉이 많고, 119구조·

1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급, 생활안전활동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밀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한편, 경찰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 범죄 예방을 위한 직접 제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장구의 사용 등 광범위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한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활동과 관계된 피난명령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는 점¹⁸⁾ 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적정한 벌칙 수준은 대민접촉을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의 차

18)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피난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 강제력 행사 수준에 따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권한 비교>

소방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제26조 피난 명령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7조의2 방해행위의 제지 등	제3조 불심검문 제4조 보호조치 등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소방청은 대부분 재난현장에서 경찰, 소방은 협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국민안전 분야에서 국민이 소방관으로 오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대형 재난사고 발생 및 책임) 등을 감안하면 경찰제복법 등에서 정하는 벌칙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 부 칙

제정안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안 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당시에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안 부칙 제2조).

제정안이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하고 소방제복을 제조·판매하려는 자에게는 이 법이 제정되는 경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한편, 안 부칙 제2조의 취지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소방제복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되, 이들에게는 이 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 소방제복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칙이라고 보임.

다만, 기존에 소방제복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자도 제정안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존의 입법례¹⁹⁾를 참고하여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9) 참고 입법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45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조(대부업자등의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 중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소방제복 종류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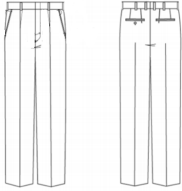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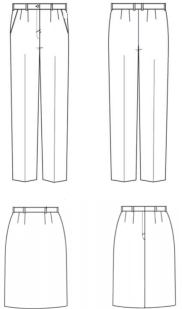
소방복(제3조제2항제1호 관련)

1. 정복

구 분	형 상	제 작 양 식	색상 및 재질
상의	(남)  (여) 	1. 깃은 벌림깃 형태로 한다. 2. 앞면 중앙에 한 줄로 4개의 은색 금속 단추를 단다. 3. 가슴과 배 부위의 각 좌우에 주머니를 만들고 은색 금속 단추를 단다. 4.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색상: 검회색 • 하복: 폴리에스테르 40±5% 양모 53±5% 나일론 4±2% 폴리우레탄 3±2% • 동복: 폴리에스테르 28±5% 양모 65±5% 나일론 4±3% 폴리우레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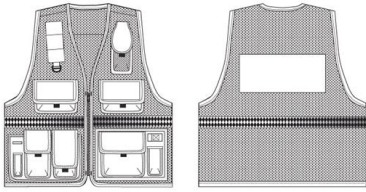
2. 근무복

구 분	형 상	제 작 양 식	색상 및 재질
셔츠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하고, 앞면 중앙에 한 줄로 단추를 단다(여성의 경우 허리에 곡선을 추가한다). 2. 가슴 부위 좌우에 주머니를 만들고 은색 금속 단추를 달며 주머니 뚜껑에 펜을 넣을 수 있는 트임을 준다. 3. 하복의 소매 끝부분과 동복의 커프스에 소방표장을 수놓는다. 4.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색상: 연모래색 • 하복: 폴리에스테르 56±5% 양모 20±5% 레이온 16±5% 나일론 5±3% 폴리우레탄 3±2% • 동복: 폴리에스테르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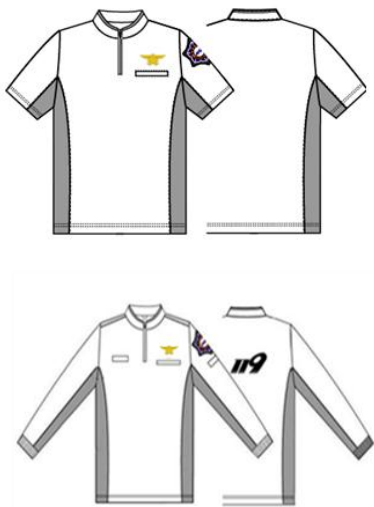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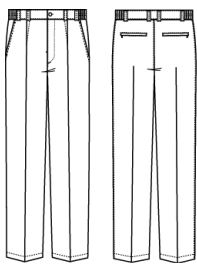
			양모 18±5% 레이온 17±5% 나일론 4±3% 폴리우레탄 3±2%
하의	(남) 	1. 긴바지로 한다. 2.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달고 허리부분은 안쪽에 고무 밴드를 넣어준다.	• 색상: 검회색 • 하복: 폴리에스테르 40±5% 양모 53±5% 나일론 4±2% 폴리우레탄 3±2%
	(여) 	1. 바지: 여성용 정장 바지형으로 하고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단다. 2. 치마: 스트레이트(straight) 치마로 통 허릿단으로 하고 앞다트를 좌우 2개씩 넣는다.	• 동복: 폴 리 에 스 테 르 28±5% 양모 65±5% 나일론 4±3% 폴리우레탄 3±2%

3. 기동복

구 분	형 상	제 작 양 식	색상 및 재질
상의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한다. 2. 앞판 중앙에 지퍼를 단다. 3. 깃, 옆선 및 소매 안쪽에 배색을 넣는다.	• 색상: 진한 주황색 및 진한 군청색 • 하복: 아라미드(aramid) 70±5%, 레이온 30±5% • 동복: 아라미드 68±5%, 레이온 28±5%, 정전기방지섬유 4±3%
하의		1. 긴 바지로 한다. 2.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하고 옆선에 덧붙임주머니를 단다.	• 색상: 진한 군청색 • 재질: 상의와 같음
조끼		1. 삼각목둘레 형태로 한다.	• 색상: 검은색

		2. 앞면에 덧붙임주머니를 달고 앞면·뒷면에 반사테이프를 붙인다. 3. 뒷면 반사테이프 윗부분에 직무를 나타낼 수 있는 벨크로 테이프(velcro tape)를 붙인다.	• 폴리에스테르 10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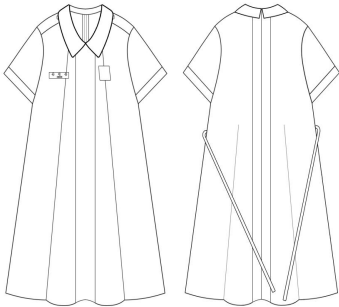
4. 활동복

구 분	형 상	제 작 양 식	색상 및 재질
상의		1. 깃은 스탠드칼라(stand collar)에 앞지퍼가 달린 형태로 한다. 2. 깃, 옆선 및 소매 안쪽에 배색을 넣는다.	• 색상: 주황색 • 하복: 폴리에스테르 52%, 폴리프로필렌 48% • 동복: 폴리에스테르 52%, 폴리프로필렌 48%
하의		1. 통 허릿단으로 제작하며 양쪽에 고무 밴드를 넣어 준다. 2. 앞 주름을 좌우 1개씩 넣고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단다.	• 색상: 검회색 • 하복: 나일론 89%, 폴리우레탄 11% • 동복: 나일론 95%, 폴리우레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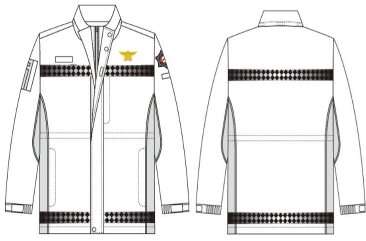
5. 점퍼

구 분	형 상	제 작 양 식	색상 및 재질
봄가을 점퍼		1. 깃은 스탠드칼라 형태로 하고 중앙에 앞여밈용 지퍼를 단다. 2. 앞판 좌우 세로 절개 부위에 주머니를 만든다. 3.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색상: 검회색 • 폴리에스테르 40±5% - 양모 53±5% - 나일론 4±2% - 폴리우레탄 3±2%
겨울 점퍼		1. 깃은 스탠드칼라 형태로 하고 중앙에 앞여밈용 지퍼를 달고 바람막이를 단다. 2. 앞판 좌우 세로 절개 부위에 주머니를 만든다. 3.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색상: 검회색 • 폴리에스테르 28±5% - 양모 65±5% - 나일론 4±3% - 폴리우레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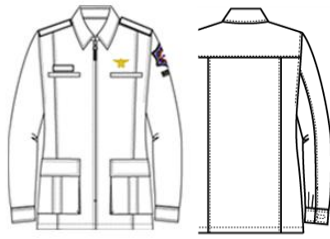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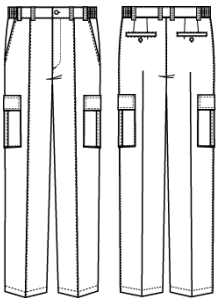
6. 임부근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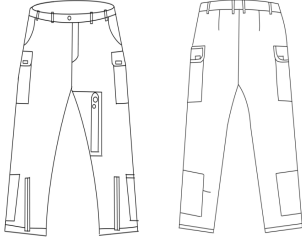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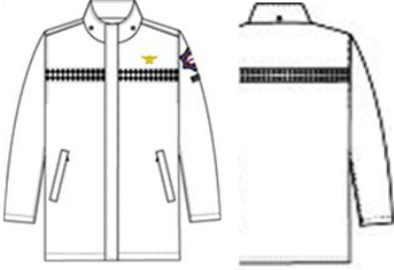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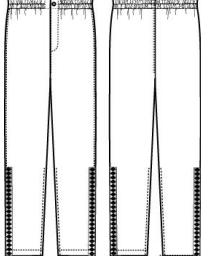
구 분	형 상	제 작 양 식	색상 및 재질
임부 근무복		1. 소매일체형 원피스로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줄씩 주름을 잡아 여유분을 넣는다. 2. 허리 부분에 허리끈을 단다.	• 색상: 검회색 • 하복: 폴 리 에 스 테 르 40±5% - 양모 53±5% - 나일론 4±2% - 폴 리 우 레 탄 3±2% • 동복: 폴 리 에 스 테 르 28±5% - 양모 65±5% - 나일론 4±3% - 폴 리 우 레 탄 3±2%

7. 방한파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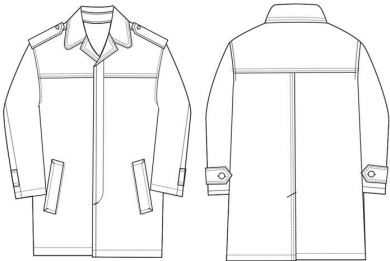
구 분	형 상	제 작 양 식	색상 및 재질
방한 파카		1. 사파리룩(safari look) 형태로 하고, 깃은 스탠드칼라 형태로 하며, 중앙에 앞여밈용 지퍼를 단다. 2. 앞면·뒷면의 옆선과 소매 안쪽에 배색을 넣는다. 3. 앞면·뒷면의 가슴 부위에 반사 테이프를 붙인다. 4. 내피는 탈착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 색상: 검회색 및 주황색 • 외피 상층: 나일론66 100% • 외피 중간층: 불소수지 필름 • 외피 하층: 나일론66 100% • 내피: 폴리에스테르 100% 불소수지 필름

8. 특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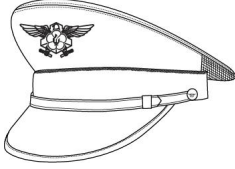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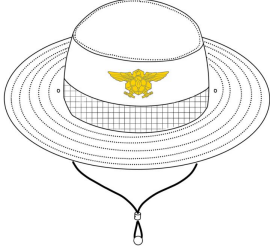
구 분	형 상	제 작 양 식	색상 및 재질
훈련복	상의 	1. 깃은 목 밴드가 있는 일반 칼라 형태로 한다. 2. 윗주머니는 가로로 달고, 아래에는 덧붙임주머니를 단다.	• 색상: 검회색 • 하복: 면 17% 폴리에스테르 83% • 동복: 면 26% 폴리에스테르 74%
	하의 	1. 통 허릿단으로 제작하며 양쪽에 고무밴드를 넣어 준다. 2. 옆선에 덧붙임 주머니를 단다.	• 상의와 동일
비행복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한다. 2. 앞판 중앙에 지퍼를 단다. 3. 가슴주머니 및 소매주머니를 단다.	• 색상: 진한 군청색 • 하복: 아라미드 70±5%, 레이온 30±5% • 동복:

			아라미드 68±5%, 레이온 28±5%, 정전기방지섬유 4±3%
		 1. 긴 바지로 한다. 2.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한다. 3. 옆 선에 덧붙임주머니를 달고 안쪽에 칼주머니를 단다.	
우천활동복	상의	 1. 후드 탈착형의 사파리 스타일로 한다. 2. 이음새 부분은 방수테이프를 붙여 처리한다.	• 색상: 주황색 • 폴리에스테르 100% 2겹
	하의	 1. 허릿단 전체에 고무밴드를 넣고 허리끈을 넣는다. 2. 이음새 부분은 방수테이프를 붙여 처리한다.	

9. 외투

외투	 1. 깃은 플랫칼라 형태로 한다. 2. 앞 채움 단추로 하며, 허리 아래 부분에 대칭으로 외입술 주머니를 단다. 3.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색상: 진한 군청색 • 폴리에스테르 46±5% 양모 48±5% 나일론 3±2% 폴리우레탄 3±2%
----	--	--

소방모(제3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형 상	제 작 양 식	색상 및 재질
정 모	남 성		1. 앞면에 모자표장을 붙인다. 2. 모자테의 바깥에는 주름테를 두르고, 양쪽에는 단추를 달며, 금색 턱끈을 단다.	- 커버: 정복 동복 겉감과 같은 원단을 사용한다. - 차양: 검은색 멜턴원단 또는 비닐
	여 성		1. 앞면에 모자표장을 붙인다. 2. 모자표장은 근무모 크기로 한다. 3. 주름테 양쪽에 귀단추를 달고 금색 파배기 턱끈을 단다.	커버 및 차양: 정복 동복 겉감과 같은 원단을 사용한다.
근 무 모	봄 가 을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2. 차양은 주머니식으로 하고, 차양 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줄로 박음질 한다.	- 검은색 - 폴리에스테르
	여 름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2. 봄가을 근무모의 형태와 같게 하되, 뒷면 전체에 망사를 사용한다.	- 검은색 - 폴리에스테르
	겨 울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2. 머리 부위는 세 쪽으로 나누고, 귀덮개가 있는 형태로 한다.	- 검은색 - 폴라플리스 (polarfleece)
훈 련 모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2. 모자의 윗면은 육각형으로 하고, 훈련모 하단에 폭 20mm 띠를 박음질한다.	훈련복 동복 겉감과 같은 원단을 사용한다.
정 글 모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2. 전체에 차양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박음질을 한다.	- 검은색 - 폴리에스테르

소방화(제3조제2항제3호 관련)

구분		형상	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단화	남성		장식이 없고 끈이 있는 단화로 한다.	·검은색 ·소가죽
	여성			
기동화			1. 겔가죽은 소가죽을 사용하며 방투습 내피를 사용한다. 2. 발목까지 올라오며 조임 부분은 끈 또는 와이어로 한다.	·검은색 ·소가죽, 아라미드(aramid)

소방공무원 지급품목표(제5조제1항 관련)

1. 기본품목

종류				수량	사용 기간(년)	지급 대상	비고
소방복	정복	하복	상의	1	5	모든 소방공무원	
		동복	상의	1	5	모든 소방공무원	
	근무복	하복	셔츠	1	2	모든 소방공무원	
			하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동복	셔츠	1	2	모든 소방공무원	
			하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기동복	하복	상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하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동복	상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하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조끼		1	3	모든 소방공무원	
	활동복	하복	상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하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동복	상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하의	1	2	모든 소방공무원	
	점퍼	봄가을		1	3	모든 소방공무원	
		겨울		1	3	모든 소방공무원	
방한파카			1	3	모든 소방공무원		
비행복			1	2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등 항공구조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모	정모	남성		1	5	남성 소방공무원	
		여성		1	5	여성 소방공무원	
	근무모	봄가을		1	3	모든 소방공무원	
		여름		1	3	모든 소방공무원	
		겨울		1	3	모든 소방공무원	
소방화	단화	남성		1	2	남성 소방공무원	
		여성		1	2	여성 소방공무원	
	기동화		1	2	모든 소방공무원		
계급장	예장 계급장			1	5	모든 소방공무원	
	금속 계급장			1	5	모든 소방공무원	
	고무 계급장			1	2	모든 소방공무원	
휘장	가슴표장			1	10	모든 소방공무원	
	깃표장			1	5	모든 소방공무원	

	소매표장		1	2	모든 소방공무원	
	119표장		1	2	모든 소방공무원	
	119배지		1	5	모든 소방공무원	
부속물	넥타이		1	2	모든 소방공무원	
	허리띠	가죽	1	2	모든 소방공무원	
		천	1	2	모든 소방공무원	
	넥타이핀	남	1	5	남성 소방공무원	
		여	1	5	여성 소방공무원	
	이름표	금속	1	5	모든 소방공무원	
		자수	1	2	모든 소방공무원	

2. 선택품목

종류			수량	사용 기간	지급대상	비고
우천활동복			1	필요시		
훈련복	하복	상의	1	필요시		
		하의	1	필요시		
	동복	상의	1	필요시		
		하의	1	필요시		
임부	하복		1	필요시	여성 소방공무원	
근무복	동복		1	필요시	여성 소방공무원	
외투			1	필요시		
훈련모			1	필요시		
정글모			1	필요시		
자수 계급장			1	필요시		
지휘관표장			1	필요시		